

의안번호	제 2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9월 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9월 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도정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정비(안 제6조)
 - (현행) 공공혁신분과위원회 등 11개 분과
 - (개정)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10개 분과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행정분과위원회
2. 안전·소방분과위원회
3. 복지·보건·여성분과위원회
4. 경제분과위원회
5. 신성장분과위원회
6. 바이오분과위원회
7. 농·어업분과위원회
8. 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
9. 균형발전분과위원회
10. 기후환경분과위원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공공혁신분과위원회</u> 2. <u>재난·소방분과위원회</u> 3. <u>자치경찰분과위원회</u> 4. <u>복지·여성분과위원회</u> 5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 6. <u>신성장분과위원회</u> 7. <u>바이오분과위원회</u> 8. <u>농·어업분과위원회</u> 9. <u>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</u> 10. <u>균형발전분과위원회</u> 11. <u>환경·산림분과위원회</u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일반행정분과위원회</u> 2. <u>안전·소방분과위원회</u> 3. <u>복지·보건·여성분과위원회</u> 4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 5. <u>신성장분과위원회</u> 6. <u>바이오분과위원회</u> 7. <u>농·어업분과위원회</u> 8. <u>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</u> 9. <u>균형발전분과위원회</u> 10. <u>기후환경분과위원회</u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의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

○ 작성자

충청북도 정책기획관 홍 순 덕